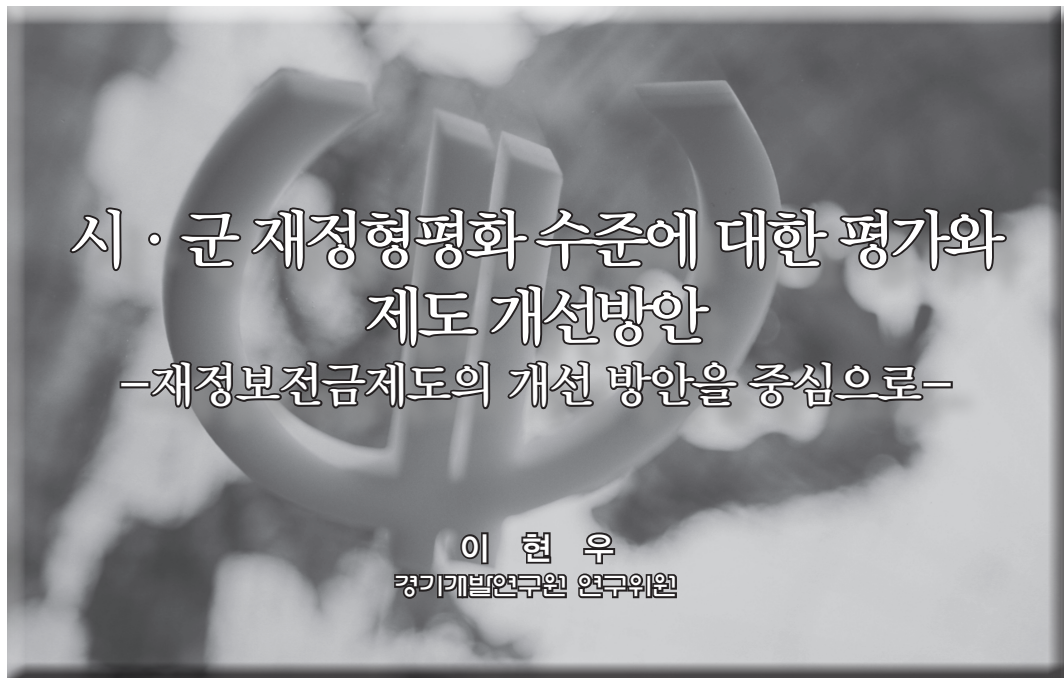




I. 머리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운데 재정형평화제도에 대해 시군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제도에 초점을 두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은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세원 편제로 인한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자치단체별 재정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이 보장되어야 지역 복지의 달성과 나아가서는 국가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등한 재정 상태를 시정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 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이전 장치가 바로 지방재정조정 및 지원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간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거나 국가시책사업이나 권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가 있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가 지역개발 및 시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 시·군의 재정사정상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제도가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조정에는 지방교부세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둘째, 특별시 및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은 재원조정교부금에 의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재정조정 형태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는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징수교부금 형태가 있고, 도의 경우는 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의 형태 및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의 형태가 있다(이현우, 2010).

이와 같은 지방재정제도 가운데 본고에서는 광역지자체(시도)와 기초지자체(시군) 간 재정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재정보전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구성은 먼저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제도의 법적근거와 주요 개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재정보전금제도의 운영과 배분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재정보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천과정

1.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 배경

재정보전금제도는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도세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관할 시·군에 도세징수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대신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도세징수액의 일정부분으로 충당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징세비 과다 보전, 도세징수교부금의 배분기준으로 인한 지역간 재정력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상용:1997, 서정섭:2003).

첫째,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징세비를 과다 보전함으로써 지방세법상의 징세지 보전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의 도세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도세징수액의 3%~5%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의 주민 수에 따라 징수액의 30% 혹은 50%까지 배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이다(이상용, 1997).

둘째, 도세징수교부금이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시·군에 지원됨에 따라 도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셋째, 도세징수교부금은 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능력 격차를 완화시켜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세원 기반이 취약하여 재정력이 약한 시·군보다 세원이 풍부하여 재정력이 강한 시·군에 보다 많은 도세징수금이 배분됨으로써 시·군간 재정력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며, 그 결과 시·군간 재정적 형평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하여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00년 징세비 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아울러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가미하여 현행의 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을 도세징수액의 3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0%)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3%만을 기존의 징세비 보전 목적에 할당하고, 나머지 도세징수액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는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그 총재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재정보전금 제도는 과거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보전금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 과거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에서부터 현재 시행 중이 재정보전금 제도까지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재정보전금 제도의 변천과정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보전금 제도로 전환된 후 지금까지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1976년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군세가 도세의 부가세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도세징수처리 비용으로 도세징수금의 10%를 교부받고 있었다.

그러나 1976년 지방세제 개혁을 통해 시·군세를 도세로부터 구분하여 독립세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감소되는 시·군의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도가 시·군에 지급해야 하는 도세징수교부금의 20%(취득세의 경우 30%)를 도세징수처리 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그 후 1979년 12월 31일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세징수교부금을 도세징수액의 20%(취득세 30%)에서 30%로 인상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교부율을 50%로 인상하는 재정적 특례를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교부금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징수비의 과다 보전, 시·군간 재정력 격차 심화, 지방교부세 제도의 정책적 효과 감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일어나면서 징수비를 3%로 균일하게 하고, 나머지 재원은 모두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데 논의를 집중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1999년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19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0%(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50%)에서 3%로 인하하고, 나머지 재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에서 도지사는 시·군에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 제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에 배분토록 하는 재정보전금제도를 신설·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90%,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 특별재정보전금은 시도조례(경기도는 일반재정보전금의 25%)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정보전금의 배분은 일반재정보전금의 60%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결함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후 2006년 11월 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재정보전금의 배분방법을 개정하였다. 일반재정보전금의 50%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재정력 지수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력역지수(1-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한편 특별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를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시군 상호간의 재정불균형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1월 3일 지방재정법 개정에서는 도세 27%(인구 50만 이상의 시 47%)의 재원부분에서 공동시설세만을 제외하던 것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최근 2010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에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의 27%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였다.

즉,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재원 증가 없이 감소되는 시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을 활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표 1〉 재정보전금 제도의 변천과정

구분	법령	법조문	변경내용	주요특징
76.12.31. 이전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도세징수처리 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규정	- 시·군세는 도세의 부가세 형태 - 도세징수처리 비용으로 지급
76.12.31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 도세징수처리 비용을 징수액의 20%로 인상 - 취득세의 경우 징수교부율을 30%로 규정	- 도세와 시·군세의 독립세 체계로 전환 -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도입
79.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신설 (도세징수교부율)	도세징수교부율 30%로 통일	도세징수교부율 인상
90.7.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설 (징수교부율)	인구 50만 이상시에 대하여 도세징수교부율을 50%로 인상	인구 50만 이상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내무부령으로 정함 (지방세법시행령에 근거함)
99.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개정 (징수교부율)	도세징수교부율을 3%로 인하하고 나머지 재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확보	도세징수교부율 30%(50만 이상시 50%)를 3%로 인하 함
00.1.12	지방 재정법	제24조 2 신설 (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도세(공동시설세 제외) 27%(50만 이상시 47%) 재원을 도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	재정보전금 제도 신설, 도입 함
	동법 시행령	제28조 3 신설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재원〉- 일반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총액의 90% - 시책추진보전금: 재정보전금 총액의 10% - 특별재정보전금: 시도조례로 정함(경기도 일반재정보전금의 25%) 〈배분〉 - 일반재정보전금의 60%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 - 특별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06.11.23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배분 방법 개정 - 일반재정보전금의 50%는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 10%는 재정력지수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 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 - 특별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를 우선 배분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으로 변경하여 시군 상호간 재정불균형이 완화되도록 함
07.1.3	지방 재정법	제29조 개정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 도세(원자력발전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27%(50만 이상시 47%) 재원을 도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 - 원자력발전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	
10.1.1	지방 재정법	제29조 개정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조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의 27%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추가 함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재원증가 없이 감소되는 시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으로 활용

III. 재정정보전금제도의 의의 및 주요내용

1. 재정정보전금제도의 의의

재정정보전금제도는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각 도의 재정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재정정보전금제도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정보전금제도의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정보전금은 “광역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와 해당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을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 제외),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정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기준에 관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정정보전금제도의 종류에는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용도의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한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다.

셋째, 시·도의 재정정보전금조례에서는 각 시·도별로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재정정보전금의 목적, 재정정보전금의 종류와 범위, 재정정보전금의 재원, 재정정보전금 관련 예산편성, 재정정보전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재정정보전금의 배분시기 및 통지, 재정정보전금의 시정, 재정정보전금의 이의신청, 재정정보전금의 반환 및 감액, 구역변경과 폐지 분합시 재정정보전금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재정정보전금제도의 주요 성격은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시세·도세를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됨을 규정(일반재정보전금)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정정보전금제도가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도에 의해 관할 구역 내의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광역시·도와 시·군간 수직적 세

원조정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도가 재정보전금을 광역시·도내 시군에 배분함으로써 시·군간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도 담당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보전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보전금 제도의 운영주체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9조와 동시행령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9개 도와 군이 존재하는 4개 광역시(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에서 재정보전금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도는 관할구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특정 기초자치단체(군)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둘째, 재정보전금의 재원규모결정은 광역시세·도세의 일정률로 한다. 재원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모든 도세(광역시세)가 아니라 도세 중 보통세 4개(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와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도세 중 목적세인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된다.

셋째, 재정보전금의 배분은 각 광역시·도가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시·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공식에 의한다. 배분기준은 각 시·군의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기타 시·군의 재정사정 등이다. 배분방식은 기준과 공식에 의한 방법과 임의적, 특정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상의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징수액의 일정비율로 구성되며, 그 종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2. 재정보전금의 재원과 배분기준

가. 재정보전금의 재원

재정보전금의 재원 및 종류 배분기준에 대해 <표 2>에 의하면, 우선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한 지방세 세목 중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중 5개 세목을 대상(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및 동체납액 징수금)으로 한다.

특 집

지방재정과 위기관리 대응방안

구체적으로 재정보전금은 시·군이 징수한 도세 징수총액에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를 공통 교부하고 남은 금액이며,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징수총액의 47%, 그 외의 시·군은 징수총액의 27%가 재정보전금의 재원이 된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90%(경기도의 경우 일반재정보전금75%, 특별재정보전금2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있다.

〈표 2〉 재정보전금제도 종류 및 배분기준

종류	재정 보전금 (100%)	일반보전금(90%)					시책추진 보전금 (10%)
		경기도:일반재정보전금(75%)				경기도: 특별재정 보전금(25%)	
		계	인구수 비율	징수실적비율	재정력 지수		
산정 배분	징수총액 27% (인구50만 이상 시 47%)	100%	(50%)	(40%)	(10%)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부족액	10%
용도	용도 지정 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 보전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의 재정적 결함 보전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 지원

나. 재정보전금의 종류별 배분기준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의 종류별 산정기준 및 배분구조에 대해 〈표 2〉에 의하면, 첫째,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 총액의 90%(경기도의 경우 재정보전금 총액의 90%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은 일정한 공식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 즉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의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40%는 당해 시·군의 광역시세와 도세의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나머지 10%는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재정력역지수)을 기준으

로 배분하고 있다.

둘째, 특정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다. 특정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보전금 총액(재정보전금총액의 9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이외의 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를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재정보전금이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경기도뿐이다.

셋째,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비징수실적이 우수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가 있어 특별한 재정수요 존재하는 시군에 교부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으로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도 재정보전금배분 조례에 따르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재정보전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되고, 경기도만 예외적으로 특별재정보전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과거의 징수교부금제도의 재원비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럼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의 연도별 추이와 종류별 배분실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V. 재정보전금제도의 배분실태

1. 재정보전금의 규모

현행 재정보전금은 9개의 도와 군이 설치되어 있는 4개 광역시의 관할하에 있는 총 166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3>은 지방자치단체세입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간단하게 지방

재정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액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정보전금의 총규모와 자치단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된 해인 2000년에는 1조2,030억원으로 그 비중이 1.4%였으나, 이 후 2002년에는 1.8%, 2004년과 2006년에는 1.9%를 차지하며 그 규모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2조9,810억원으로 1.8%, 2008년에는 1.6%, 2009년에는 1.3%, 2010년에는 2조 7,230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결국 지난 10년간 재정보전금의 규모는 2000년 1조2,030억원에서 2010년 2조7,23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총세입액에서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의 비중이 2000년 이후 50%를 넘어 증가추세에 있던 것이 2008년 이후 5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47.6%를 차지하고 있다. 자주재원의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세 비중은 2004년 26.3%에서 2009년 21.9%로 급감하였고, 세입수입 비중도 2000년 27.8%에서 2010년 21.5%로 급감하고 있다.

〈표 3〉 지방세입 중 재정보전금의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0		2002		2004		2006	
	계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세 입 총 계	84,386	100.0	119,911	100.0	126,954	100.0	150,021	100.0
지방세	20,134	23.9	28,260	23.6	33,365	26.3	38,073	25.4
세외수입	23,458	27.8	31,616	26.4	36,313	28.6	38,307	25.5
지방교부세	8,553	10.1	12,327	10.3	14,476	11.4	20,927	13.9
지방양여금	3,749	4.4	4,535	3.8	3,743	2.9	-	-
교부금	3,439	4.1	4,874	4.1	6,049	4.8	6,232	4.2
조정교부금	2,235	2.6	2,665	2.2	3,682	2.9	3,403	2.3
재정보전금	1,203	1.4	2,209	1.8	2,366	1.9	2,828	1.9
보조금	20,867	24.7	33,204	27.7	28,002	22.1	41,443	27.6
국고보조금	16,462	19.5	27,865	23.2	22,528	17.7	35,552	23.7
시도비보조금	4,404	5.2	5,338	4.5	5,473	4.3	5,891	3.9
지방채	4,184	5.0	5,092	4.2	5,003	3.9	5,037	3.4
구분	2007		2008		2009		2010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세 입 총 계	165,002	100.0	186,088	100.0	206,545	100.0	183,226	100.0
지방세	40,705	24.7	45,088	24.2	45,191	21.9	47,878	26.1
세외수입	45,377	27.5	47,158	25.3	50,376	24.4	39,393	21.5
지방교부세	24,534	14.9	30,678	16.5	28,099	13.6	25,550	13.9

지방양여금	-	-	-	-	-	-	-	-
교부금	6,989	4.2	6,715	3.6	6,592	3.2	5,991	3.3
조정교부금	4,008	2.4	3,823	2.1	3,818	1.8	3,267	1.8
재정보전금	2,981	1.8	2,892	1.6	2,774	1.3	2,723	1.5
보조금	42,515	25.8	51,220	27.5	64,966	31.5	57,988	31.6
국고보조금	35,649	21.6	43,248	23.2	55,655	26.9	50,771	27.7
시도비보조금	6,865	4.2	7,971	4.3	9,310	4.5	7,216	3.9
지방채	4,879	3.0	5,227	2.8	11,319	5.5	6,423	3.5

주: 2000년 ~ 2009년 최종예산, 2010년 당초예산 기준
자료: 재정고

이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합한 이전재원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0년에는 4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비중의 증가는 2005년 이후 지방교부세법의 개편으로 지방교부세액이 내국세총액의 19.24%로 상향 조정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재원 가운데도 특히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세입의 증가는 보조금의 증가, 특히 국고보조금의 급증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제도가 광역시·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개선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광역시·도별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재정보전금의 시·도별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2,828,767	100	2,981,792	100	2,892,082	100	2,774,040	100	2,723,918	100
부산	4,421	0.2	17,653	0.6	16,351	0.6	25,056	0.9	20,379	0.7
대구	12,287	0.4	15,000	0.5	13,677	0.5	11,494	0.4	12,107	0.4
인천	9,497	0.3	8,905	0.3	10,177	0.4	10,777	0.4	11,597	0.4
울산	15,481	0.5	14,765	0.5	20,181	0.7	20,812	0.8	18,152	0.7
경기	1,745,451	61.7	1,840,003	61.7	1,703,002	58.9	1,592,904	57.4	1,486,637	54.6
강원	111,034	3.9	119,632	4.0	111,738	3.9	104,619	3.8	109,605	4.0
충북	101,765	3.6	107,168	3.6	123,257	4.3	114,821	4.1	127,471	4.7
충남	220,475	7.8	213,209	7.2	200,174	6.9	186,149	6.7	186,746	6.9
전북	96,553	3.4	115,591	3.9	110,069	3.8	133,289	4.8	110,965	4.1
전남	68,179	2.4	77,556	2.6	84,158	2.9	77,552	2.8	94,246	3.5
경북	172,541	6.1	179,733	6.0	192,611	6.7	191,087	6.9	211,241	7.8
경남	248,571	8.8	272,577	9.1	306,687	10.6	305,480	11.0	334,772	12.3
제주	22,512	0.8								

주: 도의 경우 관할구역내 시군, 광역시의 경우 관할구역내 군에 배분된 재정보전금(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총 5개 군)
자료: 재정고

〈표 4〉에 의하면 재정보전금추이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규모와 비중이 전체 재정보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10년 재정보전금 총액은 2조7,239억원 규모이며 총액대비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비중은 54.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12.3%, 경상북도 7.8%, 충청남도 6.9%, 충청북도 4.7%, 전라북도 4.1%, 강원도 4.0%, 전라남도 3.5%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재정보전금의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그 외의 시도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재정보전금은 각 도별로 5개 세목의 도세를 대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세수입액의 47%를 나머지는 27%를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기반이 좋은 도가 그렇지 못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전국에 12개시에 불과하고¹⁾, 이중 8개의 시(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보전금의 재원 구성에 있어 경기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배분실태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경기도의 경우, 일반보전금 총액(재정보전금총액의 9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활용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을 산정하여 배분하고 있음은 〈표 2〉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 경기도 재정보전금의 종류별 배분 실태 추이를 보면 〈표 5〉와 같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의 규모는 총 1조8,074억원 정도이며 이중 일반재정보전금이 1조2,229억원, 특정재정보전금이 4,076억원, 시책추진보전금이 1,769억원 규모이다. 2010년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시와 군의 평균배분액을 보면, 27개시에는 평균 633.5억원 정도씩 배분되었고, 4개군에는 평균 242억원 규모가 배분되었다. 또한 재정보전금 총액에서 시에 배분된 재정보전금의 비중이 9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경기도내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등 8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12개시가 대상이다.

한편,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이 시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도내 31개 시·군 중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지역에 재정보전금이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경기도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타시도의 경우도 경기도와 유사한 더 재정보전금이 비중만 낮을뿐 상대적으로 시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다(서정섭, 2003). 이와 같이 재정보전금의 배분상황은 과거에 비해 재정보전금의 규모도 증가하고 군지역에 대한 평균 배분액이 2006년 140.4억원에서 2010년 242.1억원으로 지난 5년간 7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일정부문의 재정형평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의 배분이 여전히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지역에 집중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낮은 군지역에 적게 배분되므로써 종래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00년에 도세징수교부금제도에서 재정보전금제도로 전환시킬 때 재정력이 우수한 기초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어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의 편중을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정보전금제도가 광역시·도의 구역내에 있는 시·군에 대한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편, 타시도와 달리 경기도에만 존재하는 재정보전금이 특별재정보전금이다. 이는 재정보전금 총액의 90%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인구 20만 미만시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액의 70%를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정결함액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30%(인구 50만이상시 50%)에서 배가 배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의 차액을 합한 것이다.

〈표 5〉 경기도 재정보전금 종류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100%)	평균배분액		시 (%)	일반보전금(90%)			시책추진보 전금 (10%)
		27시	4군		소계 (100%)	일반재정 보전금 (75%)	특별재정 보전금 (25%)	
2010	1,807,350	63,352	24,214	94.6	1,630,488	1,222,866	407,622	176,862
2009	1,553,144	54,484	20,517	94.7	1,397,830	1,048,373	349,457	155,314
2008	1,674,366	58,475	23,883	94.3	1,494,161	1,109,148	385,013	180,205
2007	1,872,501	65,750	32,419	94.8	1,658,252	1,275,412	409,839	187,250
2006	1,740,925	62,399	14,041	96.8	1,566,833	1,174,783	392,049	174,093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재정고

특 집

지방재정과 위기관리 대응방안

〈표 6〉은 경기도의 과거 10년간 특별재정보전금의 규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의 변화를 보면, 2006년부터 화성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특별재정보전금을 받고 있는 한편, 안양시와 안산시의 경우 2009년부터, 부천시의 경우 2007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되면서 특별재정보전금 제외 지자체가 되었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지난 10년간 절대규모에서 2.7배 증가하여 2010년 4,166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또한 특별재정규모이 배분된 불교부단체의 평균액은 2000년 217억원에서 2010년 694억원으로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부단체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특별재정규모의 평균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어 재정보전금제도가 가진 재정형평화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50만이상 규모의 시에 대한 재정보전금 총액과 그 내역(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규모 추이를 검토해 보자.

〈표 6〉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특별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단 체 명
	규모	평균	
2010	4,166	694	6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
2009	3,494	582	6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
2008	3,850	481	8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 안양, 안산
2007	4,098	512	8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 안양, 안산
2006	3,920	435	9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화성, 안양, 안산, 부천
2005	3,455	431	8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안양, 안산, 부천
2004	3,346	418	8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안양, 안산, 부천
2003	3,721	465	8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안양, 안산, 부천
2002	3,411	426	8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안양, 안산, 부천
2001	2,398	299	8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안양, 안산, 부천
2000	1,519	217	7시 : 수원, 성남, 용인, 고양, 과천, 안양, 안산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표 7〉은 2010년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재정보전금의 종류별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경기도 재정보전금 총액 1조8,074억원 중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8개 대도시로 배분된 재정보전금은 9,818억원으로 재정보전금 총규모의 54.3%, 기타 23개 시·군에 8,255억원으로 총액의

45.7%가 배분되고 있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4개 단체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특별재정보전금을 교부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기타 시·군(23개)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일반재정보전금 1조2,229억원 중 인구 50만 이상의 8개 대도시에 48.7%, 23개 시·군에 51.3%를 배분하는 등 그 규모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특별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의 경우 정반대의 배분실태를 보이고 있다.

즉, 경기도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 4,076억원 중 인구 50만 이상 8개 대도시에 83.5%가 배분되고, 23개 시·군에 16.5%가 배분되고 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 1,769억원 중 8개 대도시에 26.1%, 23개 시·군에 73.9%를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시 재정보전금 규모(2010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정보전금 교부액(B)			
		계	일반 재정보전금	특별 재정보전금	시책 추진보전금
경기도 31시군총계		1,807,350	1,222,866	407,622	176,862
인구 50만명 이상시 (8개)	소계	981,806 (54.3)	595,322 (48.7)	340,311 (83.5)	46,173 (26.1)
	수원시	135,482	84,094	44,242	7,146
	성남시	218,868	100,462	116,304	2,102
	안양시	56,485	48,320	-	8,165
	부천시	75,272	68,587	-	6,685
	안산시	65,191	59,860	-	5,331
	고양시	151,546	81,783	64,286	5,477
	남양주시	66,359	59,961	-	6,398
	용인시	212,603	92,255	115,479	4,869
23시군	23시군 소계	825,544 (45.7)	627,544 (51.3)	67,311 (16.5)	130,689 (73.9)
	19시	728,690	556,265	67,311	105,114
	4군	96,854	71,279	0	25,575

자료 : 경기도내부자료, 재정고

결과적으로 재정보전금총액 배분에서 인구 50만 이상 8개 대도시에 더 많이 배분되는 것은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정형평화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여하지만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인해 재정보전금의 형평화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정정보전금제도의 재정형평화기능 취약이 특별재정보전금이 존재하는 경기도에만 국한된 것인지를 타시도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 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존재하는 5개도의 재정정보전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다.

〈표 8〉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존재하는 5개도의 재정정보전금과 해당 대도시의 재정정보전금 규모 그리고 해당 도의 시·군 평균배분액 등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5개 도의 재정정보전금은 모두 시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되고 있다. 10시와 10군으로 구성된 경남의 경우 시지역에 재정정보전금총액의 82.2%가 배분되고 있으며 시지역 평균배분액이 275억원, 군지역 평균배분액이 60억원으로 4.6배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충북의 경우에도 시지역에 재정정보전금의 배분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에 총액의 45%가 집중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경기도를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정정보전금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높은 시지역을 대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후 기초지자체 중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경기도내의 시지역에만 해당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재정보전금의 존재로 인해 경기도내 시지역의 재정정보전금 배분집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정보전금의 재원배분 산정시 활용되는 징세교부율을 보면, 징세액의 27%(인구 50만 이상 시 47%)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징수교부금 3%를 합하면 해당지자체는 과거의 징수교부금제도 상의 30% 전후를 유지하며 재정정보전금으로 교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8개 시의 비중이 재정정보전금 총액의 5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세액의 27%(인구 50만 이상 시 47%)와 징수교부금 3%를 합하면 해당지자체는 평균적으로 40%의 재정정보전금을 교부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포함되어 특별재정보전금의 형태가 더해져 재정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시도의 경우에는 재정정보전금이 미약하나마 재정형평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집중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별재정보전금의 존재로 인해 재정형평화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재정보전금 규모(2010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액	평균 배분액		시(%)
			시	군	
경기	총규모	1,807,350	63,352 (27시)	24,214 (4군)	94.6
	인구50만 이상 8시	981,806	122,726	-	54.3
충북	총규모	127,471	26,734 (3시)	5,252 (9군)	62.9
	청주시	-	56,801	-	44.5
전북	총규모	110,965	15,156 (6시)	2,504 (8군)	81.9
	전주시	-	30,000	-	27.0
경남	총규모	334,772	27,511 (10시)	5,966 (10군)	82.2
	창원시	-	55,000	-	16.4
경북	총규모	211,241	15,115 (10시)	4,623 (13군)	71.5
	포항시	-	38,286	-	18.1

주1 :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 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8개 시

주2 : 2010년 당초예산 기준

자료 : 재정고

V. 맺음말

이상 현행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배분실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재정보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재정보전금제도의 문제는 과거 징수교부금이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징수교부금제도와 동일하게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자체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타시도에서는 일정부분 재정형평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특별재정보전금의 존재로 인해 재정형평화기능이 더욱더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재정보전금의 운영방식과 배분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재정보전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정보전금의 법적 배분비율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도세징수액의 27%(인구 50만 이상 시 47%)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시군 비율은 약 38%전후 이고, 타시도의 경우 30%전후의 수준인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를 규정한 재정특례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특별재정보전금과 같은 재정특례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만 존재하는 것으로 재정보전금 총액의 90% 중 75%의 일반재정보전금과 25%의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인해 재정형평화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향후 일반재정보전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의 비율을 폐지 또는 축소시켜야 한다.

셋째, 향후 시책추진보전금 10%와 재정보전금총액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금액에 관한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50%, 도세징수실적을 기준으로 40%,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10%를 각각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수와 징수실적의 배분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재정보전금제도는 제도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지자체는 집행을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향후 재정보전금을 총괄하는 기구의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도세에 대해 구역내 시·군에서 징수대행하고, 이 징수액을 기초로 시·군간 수평적 재정조정을 하는 구조이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지방세청(가칭)을 설치하여 도세징수를 총괄하고, 지방세무행정의 전문화도 도모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재정조정기능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 참 고 문 헌 >

- 김종희, 「징수교부금의 수평적 재정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3.
- 서정섭, 「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송상훈외, 「국가와 지방간 자원배분제도 유형별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8.
- 이상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지방재정과 지방세 vol.2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0.
- 이상용,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이영희, 「징수교부금제도의 자원배분 형평화 효과」, 『한국정책학회』, 1994.
- 이용환,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 의무지출 실태와 개선방향」, 『경기개발연구원』, 2009.
- 이현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 이현우,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개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9.
- 이현우, 「분권교부세 기간연장에 따른 복지재원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 金澤史男(2010). 福祉国家と政府間関係, 日本経済評論社
- 金澤史男編(2005). 財政學, 有斐閣
- 神野直彦編(2000). 分権型税財政の運営, ぎょうせい
- 林健久(1992). 福祉國家の財政學, 有斐閣.
- 林健久, 加藤栄一, 金沢史男, 持田信樹編(2004). グローバル化と福祉国家の再編, 東京大學出版會.

